

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11985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1198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단2295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류연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알찬, 박종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구자강

변론종결 2021. 11. 9.

판결선고 2021. 12. 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단2295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답 1,478㎡ 및 D 전 1,392㎡ 중 제1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층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 지상 쇠파이프기둥 비닐지붕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토지 227㎡ 및 선내 ‘나’부분 토지 12㎡를 각 인도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4행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을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7행 “약 14년에 이른 점” 다음에 “, 원고는 애초 이 사건 건물 및 창고 건축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 지상에서 무허가로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금산군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에 따라 축사사용의 허가를 얻기 위해 축사 개축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설 설치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

점”을 추가한다.

O 제5면 제 10행 “상실된 점,” 다음에 “원고는 축사 개축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 판사 신순영